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12. 9.(목) 10:00

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4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11. 10.
- 라. 회부일자 : 2021. 11. 1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4.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나.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중소기업 융자 지원대상 확대 및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융자대상자 선정에 내실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등

5.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 감 ㉤=㉢-㉣		
중소기업육성기금	3,413,036	3,952,803	5,541,000	△1,588,197	1,824,839	

○ 자금 운용 계획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계	3,952,803	3,798,891	△ 153,912
공공예금 이자	75,311	79,850	△ 4,539
용자금 회수 이자	66,346	62,741	3,605
민간용자금 회수	3,811,146	3,656,300	154,846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계	5,541,000	4,901,000	640,000
심의위원회 수당	1,000	1,000	0
시중은행협력 이차보전	40,000	100,000	△ 60,000
민간용자금	5,500,000	4,800,000	700,000

6. 검토의견

○ 기금 개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전입금, 이월금, 정기 상환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됨.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내역

공금예금 이자수입 7,531만원, 용자금회수 이자수입 6,634만원
민간용자금회수 38억 1,114만원이며,

지출내역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중은행협력 이차보전 4,000만원
민간용자금 55억원

- 본 기금은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2022년도 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6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0.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6.7.18.>
5. 그 밖의 수익금 [중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신설 2011.10.27>
3.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신설 2016.7.18.>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전 제3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